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5
----------	----

제출일자 : 1993. 10. 8

제출자 : 남구청장

1. 提案理由

-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제5항에 산림법시행령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대부(사용)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공유임야의 대부 및 사용허가 업무는 산림법시행령제62조에 의거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요율을 적용하며,
-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증 특별회계조항인 제34조(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35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제36조(준용규정)를 삭제하는 것이며 공유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이입하도록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

2. 主要骨子

-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토록 세분화하였으며
-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조례 제34조)를 삭제
-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조례 제35조)를 삭제
- 준용규정 (조례 제36조)를 삭제

3. 關係法令

산림법시행령,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증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4.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p> <p>①~④ (생 략)</p> <p>⑤ 산림법시행령제6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 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p>	<p>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p> <p>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p>
<p>제34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임야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림관리 특별 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공유림관리 특별회계설치는 임야관리 주관과에 설치하고 국·공유림관리에 관한 매각, 취득, 대부등 업무를 담당한다.</p>	삭 제
<p>제35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공유림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수입금이 특별회계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p> <p>1. 공유재산(공유림 제외)의 매각대, 대부료, 사용료 그 수입금액의 10%</p> <p>2. 공유임야 매각대, 대부료: 그 수입금액의 100%</p> <p>3. 국유재산 매각대,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등: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의한 수입금액의 10%</p> <p>4. 일반회계 전입금: 부족재원</p> <p>②공유림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유림 구입비 및 관리비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p> <p>③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p>	삭 제
<p>제36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할 수 있다.</p>	삭 제

參 考 關 係 法 命

(산림법시행령)

제6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①산림청장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라 한다)를 징수하되, 연간대부료는 당해 임야의 임야가격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활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90. 7. 14, 90. 12. 31, 92. 2. 22, 92. 12. 31>

1. 목축·조림용, 휴양림·수목원·수렵장시설 및 법 제75조 제1항 제4호의 산업시설 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 100분의 1
 2.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청소년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 다만, 광업용 목적의 경우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할 구역에 대하여는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임야가격(대부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최종연도의 임야가격을 말한다)의 전액을 대부료로 징수한다.
 3. 기타 목적의 경우 : 100분의 10
- ②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가격의 전액을 징수한 국유림에 대하여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임야가격의 100분의 5를 연간대부로 징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야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임야 가격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중 매년 결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92. 2. 22>
- ④제 24조의 3 제 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2. 2. 22>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②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1.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